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61
----------	-----

2017.3.3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7년 2월 13일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2월 23일

-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조병욱)

가. 제안사유

- 『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』에서 정한 징수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『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』이 제정되어 지방세 외에 과징금, 이행 강제금, 각종 부담금 등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, 이 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요금은 지방세가 아니므로 그 징수에 관해서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기보다는 『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』에서 정한 징수절차에 따르도록 함.

3. 검토보고 요지

- 지금까지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방세외의 과징금, 이행강제금, 각종 부담금 등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여 왔는데 조례의 모범이 되는 『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』 개정안이 2016년 11월 30일 시행되어 위 체납처분 절차도 관련 법률에 맞게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561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2월 1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6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2월 13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『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』에서 정한 징수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『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』이 제정되어 지방세 외에 과징금, 이행 강제금, 각종 부담금 등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, 이 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요금은 지방세가 아니므로 그 징수에 관해서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기보다는 『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』에서 정한 징수절차에 따르도록 함.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”를 “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징수절차에 따른다.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징수된 요금관리) ① (생 략)</p> <p>② 미납금 등의 징수는 <u>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</u></p>	<p>제8조(징수된 요금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「<u>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</u>」에서 정한 <u>징수절차에 따른다.</u></p>

관련법령 발취

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5.29.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11.19., 2016.5.29.>

1. "지방세외수입금"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·징수(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·위탁받아 부과·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 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.

가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,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

나.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

1의2. "지방세외수입"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·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,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.